

부 산 가 정 법 원

제 3 가 사 부

심 판

사 건 2016느합200025 상속재산분할

청 구 인 갑 (1964년생, 여)

주소

소송대리인 변호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

상대방(선정당사자) 을 (1955년생, 남)

주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

상 대 방 1. 병 (1952년생, 남)

주소

2. 정 (1957년생, 남)

주소

3. 무 (1961년생, 여)

주소

4. 기 (1987년생, 여)

현재 소재불명

최후주소

5. 경 (1987년생, 여)

현재 소재불명

최후주소

주 문

1.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청구인, 상대방(선정당사자), 선정자들 및 상대방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.
2.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청구인, 상대방(선정당사자, 이하 '선정당사자'라고 한다), 선정자들 및 상대방들에게 각 분배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상속인 조00(曹00, 등록기준지 : 거제시, 이하 '피상속인'이라 한다)의 상속인으로 청구인과 선정당사자, 선정자들 및 상대방들이 있다.

나. 피상속인은 1966.경 사망하였는데,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이 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심문

전체의 취지

2.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청구인,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, 그 법정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과 같다.

3.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.

4. 분할방법
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청구인,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, ②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는 상대방 기, 경에게도 위와 같은 분할이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, ③ 상대방 기, 경은 상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이어서 상대방 기, 경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는 상속재산을 현물 분할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,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상대방들이 법정상속분인 별지 상속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.

2017. 9. 21.

재판장 판사 천 종 호

 판사 이 미 정

 판사 이 호 철

별지

선정자목록

1. 을

주소

2. 김0만

주소

3. 김0자

주소

4. 김*자

주소

5. 윤0규

주소

6. 윤0금

주소

7. 윤0선

주소

8. 윤*선

주소

9. 윤0복

주소

10. 윤0명

주소 끝.

별지

부동산목록

1. 거제시 이하 생략
2. 거제시 이하 생략. 끝.

별지

상속지분

상속인	법정상속분
갑	14/210
김0만	42/210
김0자	14/210
김*자	14/210
윤0규	10/210
윤0금	10/210
을	10/210
윤0명	10/210
윤0선	10/210
윤0선	10/210
윤0복	10/210
병	14/210
정	14/210
무	14/210
기	7/210
경	7/210

끝.